

2026. 7.

일본 최고재판소, 양산 실용품의 응용미술저작물성 판단 기준 제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정진우 선임연구원

1. 개요

노르웨이 가구 디자이너 Peter Opsvik이 1972년 디자인한 아동용 하이체어 'TRIPP TRAPP'(이하, '원고제품')의 디자이너인 Peter Opsvik와 이를 제조·판매 중인 Stokke AS(이하, '원고')가 원고제품과 유사한 구조의 아동용 의자를 제조·판매한 일본 기업 주식회사 Noz(이하,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조·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계 누적 판매 1,400만 대에 이르는 원고제품의 형태가 일본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응용미술저작물성)여부이다. 1심 법원(東京地判 令和5年9月28日 令和3年(ワ)第31529号)은 저작물성을 확정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채,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 제품으로부터 원고제품의 표현상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知財高判 令和6年9月25日 令和5年(ネ)第10111号)도 원고제품이 실용적 기능을 떠나 독립적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면서, 설령 원고제품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제품으로부터 원고제품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득(感得)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제품〉



〈피고제품1〉



〈피고제품2〉

출처: 京地判 令和5年9月28日 令和3年(ワ)第31529号 판결문 첨부 별지

2. 주요 내용

1) 양산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법 보호의 제한적 적용

최고재판소는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양산 실용품의 형태 등을 보호하는 의장법(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양산 실용품의 형태 등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여 곧바로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 이유로 의장법 체계에서는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의장권이 발생하고 존속기간도 출원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5년에 그치는 반면 저작권법에서는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고, 업으로서 행하는 행위 이외에도 그 효력이 미치며, 존속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훨씬 길고, 저작인격권(일본법상 '저작자인격권')까지 부여되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양산 실용품의 형태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면, 비용과 절차를 들여 의장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훨씬 강하고 장기적인 보호가 가능해져 의장법의 존재 의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양산 실용품의 형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의장법의 목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2) 양산 실용품의 응용미술 저작물성 인정을 위한 기준

최고재판소는 양산 실용품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양산 실용품의 전체 또는 부분에 있어서의 형태 등이 관념상(觀念上) 기능에서 유래하는 구성과는 별개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산 실용품의 전체 또는 부분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저작물 중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해당한다.

아울러 최고재판소는 위 기준을 충족하는 보호 가능한 유형으로 두 가지를 예시하였다. 첫째는 표면 장식과 같이 실용품의 표면에 단순한 무늬나 표면 가공의 범위를 넘는 장식이 부가되어 있고, 그 부가 부분의 형태가 기능과 무관하게 관념상 기능에서 유래하는 구성과는 별개의 회화나 조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실용품에 미술저작물이 단순히 부가된 형태로서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가 미친다. 둘째는 조각 등과 같이 실용품의 형태가 기능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또는 일부의 형태를 관념상 기능에서 유래하는 구성과 별개로 떼어내어 독립된 조각 등의 창작적 표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기능과의 연관성이 존재하더라도 조형적 표현이 그것을 넘어서 독자적인 미술저작물로 감상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유형은 양산 실용품으로서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인정하더라도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설명하였다.

3) 원고제품에 대한 구체적 적용

원고는 원고제품의 저작물성 근거로서 약 66도의 L자형을 이루며 바닥면에서 서 있는 2개의 다리(특징①), 당해 2

개의 다리 사이에 좌면판 및 발판이 바닥면과 평행하게 고정되는 점(특징②), 그리고 측면판 내측에 형성된 홈에 좌면판과 발판을 끼워 넣어 고정하는 점(특징③)을 조합한 형태가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형태의 특징들은 아동용 의자로서의 기능에서 유래하는 구성인 다리·좌면판·발판의 배치에 의한 형상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본건 의자의 전체 또는 부분에 있어서의 형태 등은 아동용 의자로서의 기능에서 유래하는 구성으로서만 파악할 수 있을 뿐, 당해 구성과는 별개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본건 의자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4) 재판관 보충의견

아키라 오지마(尾島明)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문에서는 저작권법과 의장법 각각의 보호대상·목적·요건·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베른협약 제2조 제7항 및 제7조 제4항은 응용미술의 보호 조건을 동맹국의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자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보호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고가 미국·유럽에서의 보호 실례를 근거로 일본에서도 저작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저작권법 제101조에 분리가능성·독립존재가능성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고 저작인격권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등 일본 법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유럽은 EU법에 의한 저작권법·의장법의 중첩적 보호가 행해지는 등 법제의 구조가 달라하므로, 타국에서의 보호 여부가 일본에서의 보호를 당연히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반론하였다. 또한, 이번 판결문에서 "미적 감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의장법상 '미'의 존재 자체는 전제되나 해당 표현이 고도의 예술성을 요구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그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이번 판결문에서 제시한 분리가능성 요건은 추상도가 높으나 그 구체적 적용은 향후 사례의 축적에 기대한다고 마무리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은 일본에서 양산 실용품의 응용미술저작물성에 관하여 최고재판소가 본격적으로 판단한 사례로서, 향후 일본 내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재판소가 제시한 기준, 즉 “양산 실용품의 전체 또는 일부 형상 등이 관념상 기능에서 유래하는 구성과는 별개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파악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종래 하급심에서 사용되어 온 “실용적 기능을 떠나 독립적으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성”이라는 기준을 보다 정제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사건은 응용미술저작물성을 둘러싸고 저작권법과 의장법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호 범위의 중첩 문제를 최고재판소 차원에서 명확히 실시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는 양산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권법과 의장법 각각의 보호 목적·요건·존속기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두 제도가 서로 다른 목적과 요건 아래 설계된 독자적인 체계인 만큼, 각각이 자신의 영역에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도록 해석되어야 하며, 어느 한 제도의 경계를無理하게 넓힐 경우 규범적 명확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국내 논의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令和8年4月24日判決・令和7年（受）第356号[TRIPP TRAPP事件].